#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675

발의연월일: 2025. 6. 9.

발 의 자: 황정아·최민희·박지원

박민규 · 한민수 · 이병진

김 윤・김우영・장종태

박용갑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 성 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성을 평가하 여 적합여부에 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 고, 기술성 평가결과 적합의견을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기 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신속성과 창의성이 요구되지만, 기획부터 예비 타당성조사 통과까지 평균 3년 이상이 소요되는 등 제도와 현실간의 괴리로 연구현장에서는 예비타당성 제도의 폐지와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하여 대형연구개발의 신속성과 창의성을 확보하고,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이후 대형 연구개발 예산이 안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제12조의 3 및 제12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10월 31일까지"를 "10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매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제2항에"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제5항"을 "제3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는 다음 연도 예산의 배분·조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검토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포함된 국가 연구개발사업(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사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 그 결과를 요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2조의3(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사업추진심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이하 "사업추진심사"라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세부 유형 및 분류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 연구개발 시설·장비 등을 구축하거나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2. 연구단지, 연구시설 등 연구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3.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연 구·시험·제작 및 발사·관제·정보송수신 등에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추진 심사 대상이 되는 사업에 관한 중장기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추진심사 대상이 되는 사업의 다

음다음 연도 예산 반영을 위한 심사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제12조의 2제4항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기전에 사업추진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12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에 반영할 수 있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추진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추진심사(제12조의4에 따른 계획 변경심사를 포함한다)를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지 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추진심사(제12조의4에 따른 계획변경심사를 포함한다)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⑧ 그 밖에 사업추진심사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조의4(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계획변경심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은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계획변경심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 1. 사업추진심사를 거친 사업에 대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실시한 결과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2. 사업추진심사를 거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업 환경의 변동 등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3.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사업추진심사 대상사업 규모에 미달하여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구축형 연구개 발사업으로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사업추진심사 대상사업 규모로 증가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계획변경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결과를 제12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에 반영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계획변경심사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획재 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사업추진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의 기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이 법 시행 당시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거나 실시 중인 것은 제외한다)에 관한 예산요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법령과 「과학기술기본법」제12조의3"을 "법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 산의 배분·조정 등) ① 국가 산의 배분·조정 등) ①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중앙행 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다 음다음 연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기획재 ----10월 31일까지, 대통령령 정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 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가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제 12조의3제1항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것은 제 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를 매년 12월 31일까지-----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 -----제2항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제 를 검토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 의 심의를 거쳐 제7조의2제3항 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매년 3월 15일 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후단 신설>

### ④·⑤ (생 략)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지원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u>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사</u>
업계획서 검토 결과는 다음 연
도 예산의 배분·조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검토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u>⑥</u>
제3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
업의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u>검토하고 제5항</u>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포함
되 구가여구개반사언(제2하에

⑦・⑧ (생 략)

제12조의3(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의견 제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
개발사업으로서 「국가재정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예비타당성조
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한 국
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기
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
사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
성을 평가하여 적합 여부에 관
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성 평가 대상 국가연

따라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사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 산특별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 그결과를 요약하여 제출하여야한다.

<u>⑧</u>·<u>⑨</u> (현행 제7항 및 제8항 과 같음)

제12조의3(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의 사업추진심사) 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 <u>발사업 중</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이라 한 다)으로서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 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에 대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이하 "사업추 진심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축형 연구개발 사업의 세부 유형 및 분류기준 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연구개발 시설・장비 등을

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과학기 구축하거나 획득하는 것을 목 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술성을 | 평가하여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 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성 평가 의 기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 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적으로 하는 사업
- 2. 연구단지, 연구시설 등 연구 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3.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 제3호가목에 따른 인공우주물 체의 연구ㆍ시험ㆍ제작 및 발 사・관제・정보송수신 등에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을 목적 으로 하는 사업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 지의 사업에 준하는 사업으로 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게 사업추진심사 대상이 되는 사업에 관한 중장기 수요조사 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추진심사 대상이 되는 사 업의 다음다음 연도 예산 반영 을 위한 심사 소요기간을 고려

하여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사업추진심사를 신청하여야 한 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12조의2제5항제3 호에 따른 주요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의 배분·조정에 반 영할 수 있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추진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추진심사(제12조의4에 따른 계획변경심사를 포함한다)
  를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은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 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제6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 기관의 장은 사업추진심사(제1 2조의4에 따른 계획변경심사를 포함한다)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여 야 한다.

8 그 밖에 사업추진심사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 부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의4(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기획변경심사) 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은 구축형 연구 개발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사(이하이 조에서 "계획변경심사"라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심사를 거친 사업에

대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를 실시한 결과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2. 사업추진심사를 거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업 환경의 변동 등으로 사업계획의 변경 이 필요한 경우
- 3.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사업추진심사 대상사업 규모에 미달하여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한구축형 연구개발사업으로서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사업추진심사 대상사업 규모로 증가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계획변경심사를 실시한 경우에 는 그 결과를 제12조의2제5항 제3호에 따른 주요 국가연구개 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에 반영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축형 연구개발사 업의 계획변경심사의 대상·방

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 항은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한다.